

“광주천의 선물 수달을 지켜주세요”



지난달 19일 광주시 동구 충장동 인근 광주천변에서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두마리가 먹이를 찾고 있다. 수달은 동구 용연마을부터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광주천 전구간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천에서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과 왜가리가 먹이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광주일보는 지난달 19일 광주시 동구 충장동 인근 광주천에서 수달 두마리와 왜가리가 약 1m 거리를 두고 서로 주시하고 있는 광경을 카메라에 포착했다. 그동안 수차례 광주천에서 수달이 목격되긴 했지만 왜가리와 대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건 처음이었다.

한쌍의 수달은 광주천변에서 물장구를 치는 등 노닐다 갑자기 왜가리가 나타나자 수염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수달과 왜가리의 먹이가 붕어와 잉어 등으로 서로 겹치기 때문에 서로 자기 영역을 지키겠다는 표현으로 보였다.

수달과 왜가리 사이에 수초간 흐르던 긴장감은 서로 제 갈 길을 가면서 해소됐다.

수달은 지난 2007년께 광주천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처음 확인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당시 수달 서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주시 남구 방림동 인근 광주천 설월교 아래 바위에서 7개의 수달 배설물이 발견됐다.

2015년 8월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천 인근 도로에서 생태계 교란종 뉴트리알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현장 조사 결과 ‘수달’로 확인됐다. 환경청이 목격 장소에 설치한 무인카메라에 수달이 찍힌 것이다.

광주 환경단체 “하천 전 구역 서식” 생태통로 확보 등 보호대책 세워야



지난달 20일 본보에 게재된 수달 포착 기사.

광주환경단체들은 광주천 전 구간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달 서식을 광주천이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했다는 지표로 보고 있다.

광주전남녹색연합(이하 녹색연합)에 따르면 광주천 28개 지점에서 수달 배설물 89개와 3개 지점에서 발자국 3개가 발견됐다.

조사단은 광주시 동구 용연마을부터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광주천 전 구간을 4구간으로 나눠 직접 결

으며 배설물과 발자국 흔적을 찾았다.

조사 결과 광주천 상류구간인 교동교와 녹동교, 용산교, 태암교 주변에서 26개의 배설물이 확인됐다. 남광교와 학강교, 광암교, 중앙대교 등에서도 발자국과 배설물이 발견돼 도심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 2015년 (사)한국수달보호협회가 작성한 ‘무등산국립공원 수달 서식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에도 증심사천 등 무등산국립공원 8개 계곡에 수달 6~8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달이 도심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주로 로드 킬(Road Kill)로 희생되고 있다. 하지만 수달 보호대책은 미흡하다.

지난 2015년 5월 광주시 서구 유촌동 광주천 인근 도로에 수달 1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주민이 신고했다. 2014년 12월에도 광주시 남구 승촌보 인근 도로에서 수달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수달 2마리 모두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광주천 상류 아파트 건설과 하천 산책로·자전거도로 개설로 수달이 몸을 숨기며 이동할 수 있는 생태통로를 파괴하고 있다”며 “광주천과 황룡강, 무등산에 살고 있는 수달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수달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역업체 10곳 중 1곳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789곳 중 76곳)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지역업체 10곳 중 1곳 꼴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수는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감독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789개 업체를 지도·점검한 결과 76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사용 등 위반사항 105건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위반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행정처분(과태료 포함)을 받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무허가 판매·운반 등 불법 유통 여부, 운반계획서 제출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법령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미실시가 23건(2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변경허가 미이행 15건(14.3%), 취급기준 위반 12건(11.4%), 실적보고 미이행 10건(9.5%), 도급기준 위반 9건(8.5%), 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미이행 7건(6.6%), 표시 부적정 등 기타 29건(27.6%) 순이었다.

특히 지난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2015년 32개 업체 40건, 2016년 78개 업체 95건 등 해마다 위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점검과 함께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법 위반사항을 환경청에 알리면 벌칙 등을 면제할 계획이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민·관 협의체 운영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이 적극 수렴된다.

환경부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과 이관에 따라 환경부가 1월부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안착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협의하며 경제단체, 산업계, 관계 부처로 구성·운영된다.

환경부는 이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1단계 할당 때 591개의 기업에 약 5억3800만t을 할당했다.

환경부는 또한, 올해 8월 말 제1차 할당계획 기간(2015~2017년) 배출권 정산 완료 시점까지 배출권 거래 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의 수정·보완 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공청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량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2015년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로드맵은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으로 2016년 12월 수립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평촌에서 자연과 함께 겨울나기’

광주환경연합 참가 어린이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어린이 자연캠프 ‘평촌에서 겨울나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겨울 캠프는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평촌마을에서 ‘겨울나기’라는 주제로 열리며, 오는 27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된다. 동·식물의 겨울생태를 엿보고, 자연 소재를 활용하는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 6학년까지 선착순 28명으로 참가비는 회원 6만5000원, 비회원 7만2000원이다.

참가신청은 전화(062-514-2470) 또는 환경연합 홈페이지(gj.ekfem.or.kr) 프로그램 참가신청란에서 하면 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화학물질 취급 기준 일부 완화

2014년까지 착공된 업체 적용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 제도를 1일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으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1.5m 이상 이격’ 등을 준수하기 힘든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은 총 413개이며, 물리적인 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조항은 실내 및 실외 저장·보관 시설의 방류벽 설치 기준 등 6개다. 적용 대상은 ‘화관법’ 개정안 시행 이전인 2014년 12월 31일 전에 착공된 업체에 한정한다.

해당 사업자는 대전 화학물질안전원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하면 법적 기준을 준수했다고 인정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경기도 양평, 여수 거문도, 전원주택토지 투자 하실분!

문의.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010-3605-5000